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26.(수) 11:00 < 7.27.(목) 조간 > 배포 2023. 7. 26.(수)

이번 여름 휴가는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 튜브, 물안경 등 여름 성수기 용품 수입통관 전에 불법제품 4만여 점 사전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6.5.~30.)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국표원, 관세청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하여 검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많이 적발**하였다.

* ▲국표원이 국내 유통단계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위반업체 및 제품에 관한 정보와 ▲관세청의 우범화물 선별(Cargo Selectivity)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을 선정

** ('22년) 275건(63.6만 점) 중 68건(3만 점) 적발(24.7%) → ('23년) 411건(34.2만 점) 중 190건(4.1만 점) 적발(46.2%)

적발된 제품으로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약 1.7만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안경 약 9천 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약 7천 점, ▲수영복 약 2천 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큰 만큼,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책임자	과 장	박해범 (043-870-5430)
		담당자	사무관	최준환 (043-870-5435)
담당 부서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책임자	과 장	김한진 (042-481-7830)
		담당자	사무관	김다사롬 (042-481-784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여름 성수기 용품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 품목별 검사 현황 >

(단위 : 건수)

구분	대상 품목	집중검사 결과						
		계			인증진위[1]		제품시험[2]	
		대상(a) (수량)	적발(b) (수량)	적발률 (b/a)	대상 (수량)	적발 (수량)	대상 (수량)	불량 (수량)
어린이 제품	①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수영복)	50 (2,589)	39 (2,522)	78.0	50 (2,589)	39 (2,522)	0 (0)	0 (0)
	② 물놀이기구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수영보조용품)	33 (32,725)	9 (5,248)	27.3	33 (32,725)	9 (5,248)	0 (0)	0 (0)
	③ 완구(물총, 풀장, 물풍선, 비치볼)	29 (63,522)	8 (5,093)	27.6	29 (63,522)	8 (5,093)	0 (0)	0 (0)
	④ 어린이용 선글라스	14 (637)	7 (140)	50.0	14 (637)	7 (140)	0 (0)	0 (0)
	⑤ 어린이용 물안경	11 (22,058)	3 (2,900)	27.3	11 (22,058)	3 (2,900)	0 (0)	0 (0)
	⑥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6 (102)	0 (0)	0.0	6 (102)	0 (0)	0 (0)	0 (0)
	소 계	143 (121,633)	66 (15,903)	46.2	143 (121,633)	66 (15,903)	0 0	0 0
전기·생활용품	⑦ 물안경	101 (8,736)	76 (6,172)	75.2	101 (8,736)	76 (6,172)	0 (0)	0 (0)
	⑧ 선글라스	18 (5,302)	13 (1,639)	72.2	18 (5,302)	13 (1,639)	0 (0)	0 (0)
	⑨ 물놀이기구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수영보조용품)	31 (23,199)	12 (6,712)	38.7	31 (23,199)	12 (6,712)	0 (0)	0 (0)
	⑩ 전지(전기모기채, 셀카봉 리모컨, 휴대용 선풍기)	31 (72,671)	8 (7,435)	25.8	31 (72,671)	8 (7,435)	0 (0)	0 (0)
	⑪ 가정용 섬유제품 (수영복)	8 (74)	7 (72)	87.5	8 (74)	7 (72)	0 (0)	0 (0)
	⑫ 냉장기기(제빙기)	30 (5,578)	6 (77)	20.0	30 (5,578)	6 (77)	0 (0)	0 (0)
	⑬ 전격살충기, 전기포충기	8 (40,940)	2 (3,610)	25.0	8 (40,940)	2 (3,610)	0 (0)	0 (0)
	⑭ 스포츠용 구명복	13 (11,650)	0 (0)	0.0	13 (11,650)	0 (0)	0 (0)	0 (0)
	⑮ 냉방기기(냉방기, 선풍기, 송풍기)	28 (52,394)	0 (0)	0.0	28 (52,394)	0 (0)	0 (0)	0 (0)
	소 계	268 (220,544)	124 (25,717)	46.3	268 (220,544)	124 (25,717)	0 (0)	0 (0)
합 계		411 (342,177)	190 (41,620)	46.2	411 (342,177)	190 (41,620)	0 (0)	0 (0)

비고) [1] 인증진위(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 위반)는 세관(협업검사센터)에서 검사 실시

[2] 전문 시험·검사기관을 통하여 주요 부품 임의 변경 여부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 시험 실시

< 적발유형별 검사 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품목명	집중검사 부적합 적발				조치 내용
		업체수 (수입)	모델수	건수	수량	
① KC인증 미필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수영복)	2	7	30	2,326	통관보류
	성인용 선글라스	4	1	9	809	
	물놀이기구(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수영보조용품)	5	6	6	660	
	완구(물풍선, 풀장)	2	2	4	37	
	물안경	2	1	3	700	
	어린이용 선글라스	1	3	3	10	
	전격살충기	1	2	2	3,610	
	어린이용 물안경	1	1	1	20	
	가정용 섬유제품(수영복)	1	1	1	3	
	소 계	**19**	**24**	**59**	**8,175**	
② 허위표시	물놀이기구(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2	5	14	10,700	통관보류
	유아용 섬유제품(수영복)	1	1	2	180	
	소 계	**3**	**6**	**16**	**10,880**	
③ 표시위반	물안경	17	43	73	5,472	통관보류
	전지(셀카봉 리모컨, 휴대용 선풍기)	6	6	8	7,435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수영복)	3	7	7	16	
	제빙기	2	6	6	77	
	가정용 섬유제품(수영복)	3	6	6	69	
	완구(비치볼)	4	4	4	5,056	
	성인용 선글라스	2	1	4	830	
	어린이용 선글라스	2	3	4	130	
	어린이용 물안경	2	2	2	2,880	
	물놀이기구(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1	1	1	600	
	소 계	**42**	**79**	**115**	**22,565**	
합 계		**64**	**109**	**190**	**41,620**	

비고) 국내 안전기준을 불충족(안전인증 미필·허위표시·표시위반)한 제품은 우선 통관보류 조치됨. 이후 국표원의 안전인증을 받거나 위반사항을 보완(표시사항 정정 등)하면 통관이 가능함. 그 외에는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됨

붙임 2 **주요 적발 사례**

구 분	적발제품 사례		비고
① KC인증 미필	 완구(물풍선)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전기모기채)	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② 허위 표시	 검사제품 사진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안전확인신고한 제품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색상이 동일하지 않은 제품
③ 표시사항 위반	 어린이용 선글라스	 아동용 수영복	인증정보 미표시 (KC마크, 수입자명, A/S연락처 등)

비고)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을 수입하면서 인증을 받은 모델의 정보를 표시(허위표시) 또는 안전인증 정보(KC 마크, 수입자명 등) 표시를 누락